

---

2028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

#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

---

※ “202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”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, 추후 발표되는 『202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(수시모집 및 정시모집)』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4.



서울교육대학교

# I. 전형별 모집인원

(단위: 명)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	2028학년도	비고	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	40		
	학생부 종합	교직인성우수자전형		150	정원 내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대상자전형	5		
			농어촌학생전형	10	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	19		정원 외
	장애인등대상자전형		11		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특별전형*	7		
			북한이탈학생전형*	3		
	소계				245	
	정시 (나)군	수능 위주	일반전형		110*	*2026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결원 발생 3명 이월
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			장애인등대상자전형	정원 외	수시모집 미충원인원 발생 시 이월 모집	
기타		재외국민특별전형*				
		북한이탈학생전형*				
소계				110		
합계				355		

\*기타(재외국민특별전형, 북한이탈학생전형)은 모집시기별(수시/정시) 지원 횟수 제한사항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

### Ⅲ. 전형요소별 배점 및 전형단계

모 집 시 기	전형 유형	전형명		전형요소 반영률 및 전형단계
수 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	1단계(2배수): 학생부 교과성적 70% +교과 정성평가 30% 2단계: 1단계 성적 80%+면접평가 20%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	1단계(1.5배수): 학생부 서류평가 100% 2단계(1배수): 1단계 성적 50% + 면접평가 50%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대상자전형	1단계(2배수): 학생부 서류평가 100% 2단계(1배수): 1단계 성적 50% + 면접평가 50%
			농어촌학생전형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수급자등전형	
	장애인등대상자전형		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특별전형	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 (초,중,고 학생부 서류 P/F 반영)
북한이탈학생전형			일괄합산: 면접평가 100%	
정 시 (나) 군	수능 위주	일반전형		1단계(2배수): 수능성적 100% 2단계(1배수): 1단계 성적 80% + 면접평가 20%
		미충원에 의한 이월 전형		

#### IV. 수능최저학력기준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	수능최저학력기준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</li> </ul>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선택) <b>2개 영역의 합 6등급</b> 이내</li> <li>■ 한국사 <b>4등급</b> 이내</li> <li>※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</li> </ul>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 대상자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선택) <b>2개 영역의 합 8등급</b> 이내</li> <li>■ 한국사 <b>4등급</b> 이내</li> <li>※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</li> </ul>
			농어촌 학생전형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선택) <b>2개 영역의 합 8등급</b> 이내</li> <li>■ 한국사 <b>4등급</b> 이내</li> <li>※ 제2외국어/한문은 반영하지 않음</li> </ul>
	장애인등 대상자전형			
	기타	기타 특별전형	북한이탈 학생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</li> </ul>
재외국민 특별전형				
정시 (나)군	수능 위주	일반전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영어 3등급 이내, 한국사 4등급 이내</li> </ul>
		미충원에 의한 이월 전형		

## V. 학생부교과(학교장추천전형) 1단계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학년 반영범위: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(5개 학기) 석차 등급 또는 성취도가 표기된 전 과목 반영</li> <li>* 학년별, 학기별, 교과별 가중치 없음</li> <li>* 교양교과 등 이수(P)과목은 반영하지 않음</li> <li>- 반영비율: 석차 등급 또는 성취도가 표기된 전 과목 100% (단, 사회/과학 융합선택과목 제외)</li> <li>- 교과 정성평가: 교과학습발달상황(과목별 이수현황, 성적,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)에 대한 정성평가</li> </ul>

## VI. 정시전형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

영역	국어	수학	탐구 (통합사회/통합과학)	합계
배점(점)	266.7	266.7	266.7	800
비율(%)	33.3	33.3	33.3	100
점수 활용지표	표준점수			

※ 각 수능 영역별 환산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

## VII. 지원자격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지원 자격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</li> <li>가. 2028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</li> <li>나. 소속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</li> <li>※ 추천 인원은 고교별 재적인원 기준 3% 이내 (고3 재적인원 * 0.03,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)</li> </ul>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지원 자격
학생부 종합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교직원성우수자전형	-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		국가보훈 대상자 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의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		농어촌 학생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서 중·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거주한 자 (사망, 이혼,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부 또는 모만 기준으로 함) 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·면 소재 학교이어야 함(동일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) ※ 부모·학생의 거주지는 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읍·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※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되 재학 당시 읍·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읍·면으로 인정함 ※ 농·어촌소재 특수목적고(과학고, 영재고, 국제고, 외국어고, 예술·체육계열 고등학교 등)는 지원할 수 없음
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.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		장애인등 대상자 전형	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	지원 자격
	기타	기타 특별전형	재외국민 특별전형	<p>나.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및 장애 등급자(국가보훈처 등록)</p> <p>-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·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(예정자 포함)한 재외국민          ※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·중·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수학 연한과 관계없이 인정          ※ 전학 등의 사유로 재학 기간이 12년에서 1학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 인정</p>
			북한이탈 학생전형	<p>- '가', '나'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         가.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조기졸업예정자 제외)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       나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</p>
		일반전형	<p>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</p>	
정시 (나) 군	수능 위주	일반전형		<p>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</p>

## Ⅷ.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및 방법

모집 시기	전형 유형	전형명	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및 방법	
수시	학생부 교과	학교장추천전형	■ 제1호 ~ 제9호 조치: 지원 자격 제한 (추천 불가)	
	학생부 종합	교직원성우수자전형	■ 제1호 ~ 제9호 조치: 1단계 평가 시 '부적격' 처리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	국가보훈 대상자전형	■ 제1호 ~ 제9호 조치: 지원 자격 제한
			농어촌 학생전형	
		기회균형 특별전형 II	기초생활 수급자등 전형	■ 제1호 ~ 제9호 조치: 1단계 평가 시 '부적격' 처리
	장애인등 대상자전형			
기타	기타 특별전형	북한이탈 학생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	■ 제1호 ~ 제9호 조치: 지원 자격 제한	
정시	수능	일반전형	■ 제1호 ~ 제9호 조치: 1단계 평가 시 '부적격' 처리	
		수시 미충원에 의한 이월 전형	■ 제1호 ~ 제9호 조치: 이월한 전형의 조치 사항에 따름	

※ 검정고시 출신자 중 고교 재학 사실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일부가 존재하는 경우, 고교 재학생 및 졸업자와 동일한 조치로 반영함 (재학 기간 동안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)